

# 審 查 報 告 書

2002. 4. 20  
총무위원회

##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2002. 4. 10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2. 4. 11
- 라. 上程日字 : 2002. 4. 20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自治行政課長 : 崔鐵珪)

### 가. 提案理由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나. 主要骨子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정함.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
-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 규정.
-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 규정.
-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게 1개 이상 선정 운영
  -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가급적 지양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
  -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등 10명 이내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 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 위원수를 25명 이내로 하며 읍·면·동장이 위촉함.
  - 고문은 3명 이내로 위촉 가능
  - 시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이 위촉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
  - 여성위원이 1/3이상인 되도록 노력 권장
- 위원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함.
-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현행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여유 시설과 공간을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편의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사항으로써
- 사무와 인력조정은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도에 우선 시내 5개 전동과 인지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나머지 읍면은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본 수정 조례안은 이미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종합, 수렴하여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을 작성 시달한 것임.
- 따라서 지난해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에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수정안과 같이 원안을 수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 서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한수정안

서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제1조(시행일)로 하고 제2조에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기존의 읍·면·동정자문위원회가 해체된 것으로 본다” 를 신설 한다.

##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은 기존의 읍·면·동정자문위원회가 해체된 것으로 본다.</p>

의안번호	제 25호
의결 년월일	2002. 4. . (제 회)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2. 4. 10.

#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의안 번호	255
----------	-----

제출년월일 : 2002. 4. / 9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수정안의 제안 이유

- '99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향상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편중 등 일부 문제점이 노정되어,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위원회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준칙안을 추가로 시달하였음
- 이에 따라 기 의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준칙에 맞게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2. 수정안의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 함(안 제4조 제2항)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 함(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게 1개 이상 선정 운영
  -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가급적 지양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시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안 제7조 제4항 내지 제6항)
  -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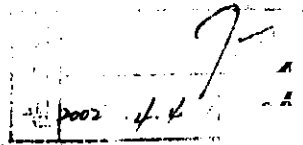
-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등 10명 이내 자문단을 구성 운영 할 수 있음
- 사용료등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 함(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사용료 : 읍면동장이 징수하여 세입조치
  - 수강료 :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
- 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 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5항)

### 【주민자치위원회】

- 위원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의 신설(안 제17조제1항, 18조제3항)
  - 위원은 15~25명 이내 → 25명 이내로
  - 고문은 3명 이내로 위촉 가능
  - 시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나 읍면동장이 위촉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 읍면동장의 직권위촉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
  - 여성위원이 1/3이상인 되도록 노력 권장
- 위원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안 제17조 제7항)
  - 위원장 위원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위원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함

### 3. 참고자료

- 입법예고
  - 기 간 : 2002. 3. 15 ~ 4. 4(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2002. 3. 7, 행정자치부)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신·구조문 대비표(발체)



#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2장 주민자치센터

- 제4조(설치등)** ①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읍·면·동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원안 · 수정안 대비표 및 조문별 수정 사유

원	안	수	정	사	유
<p><b>제1장 총 칙</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p> <p>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p>	<p>○ 법적인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별표1)의 「2.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중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p> <p>○ NGO 등 민간단체 포함 명확화</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li> <li>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li> <li>3.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li> <li>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li> <li>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li> </ol> <p><b>제2장 주민자치센터</b></p> <p>제4조(설치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제3조(원칙) (현행과 같음)</p> <p>제4조(설치등) ①(현행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②자치센터의 명칭은 <u>담해 읍·면·동 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u></p> <p>제5조(기능)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p> <p>1.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p> <p>2.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p> <p>(신 설)</p> <p>3.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p>	<p>②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p> <p>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p> <p>1.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기꾸기, 자율발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p> <p>2.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p> <p>3.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p> <p>4.(현행 제3호와 같음)</p>	<p>• 유사 시설기관과의 혼동 방지</p> <p>•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의 명확한 전달</p> <p>•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p> <p>• 주민자치기능 분야 예시의 구체화</p> <p>• 사(私)경제 또는 개인영역과 관련성이 큰 분야는 가급적 지양</p> <p>• 지역복지기능 추가</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4.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p> <p>5.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 자치 기능</p> <p>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p> <p>(신 설)</p>	<p>5.(현행 제2호와 같음)</p> <p>6.(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p> <p>제6조(시설및프로그램)㉠(현행과 같음)</p>	<p>•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 도모</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자치 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p> <p>②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지원 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조(운영) ①(현행과 같음)</p> <p>② -----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 자치센터 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 완화 및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p> <p>•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 적극 참여 유도</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 ----- ----- -----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수정 사유</p> <p>• 자치센터 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 참여 활성화</p> <p>• 시의 자치센터 운영비 등 재정지원 원칙 제시로 건전한 발전 도모</p>
<p>(신 설)</p>	<p>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되, 제10조에 의 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신 설)</p> <p>제8조(자원봉사자)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p> <p>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p> <p>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 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 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p>	<p>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8조(자원봉사자) (현행과 같음)</p> <p>제9조(강사) (현행과 같음)</p>	<p>•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 단위의 자문단 설치 운영 근거</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p>	<p>제10조(사용료등)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p> <p>③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p>	<p>•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회비는 비공식적인 용어로서 제외)</p> <p>•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 명확화</p> <p>•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결정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 강화</p> <p>-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p> <p>-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p>

수 정 사 유		수 정 안	수 정 안
	<p>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신 설)</p> <p>• 사용료 등 징수시 일정 이용자에게 대한 감면 근거 마련</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읍·면·동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 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자치센터 운영재원 자체 확보 능력 제고</p> <p>• 읍·면·동장과 협의를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주체가 되도록 하여 자율성 확대</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신 설)</p> <p>제11조(이용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자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①읍·면·동장은 “<u>사용료</u>”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u>수강료</u>”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u>수강료</u>”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p> <p>제11조(이용등)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사용료</u>  <u>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u>  -----</p>	<p>“수강료”의 경우 징수·관리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회계책임자 지정 및 위원회 명의로 수행토록 제도화</p> <p>• 사용자 등의 납부는 사용자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에 한함을 명확히 규정</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④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2조(주민참여)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p> <p>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12조(주민참여) (현행과 같음)</p>	<p>·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 (현행과 같음)</p>	
<p>제14조(보고)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u>1월전까지</u>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보고)① ----- -----<u>3월전까지</u> ----- ----- -----</p>	<p>• 예산편성, 심의 등 일정을 감안하여 보고기한 조정</p>
<p>②읍·면·동장은 <u>자치센터 운영에 따른</u>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u>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u> <u>자치센터 운영에 따른</u> ----- -----<u>심의를 거쳐</u> <u>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u>에 ----- -----</p>	<p>• 사용료 등의 수입·지출내역 포함 명확화 및 보고시한 명시</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b>제3장 주민자치위원회</b></p> <p>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p> <p>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li> <li>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li> <li>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제15조(설치) -----  <u>운영에</u>----- <u>심의 하거나</u>  <u>결정하기 위하여</u> -----  -----</p> <p>제16조(기능) ①(현행과 같음)</p> <p>1.~4.(현행과 같음)</p> <p>5.----- <u>운영에</u>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관여범위를 “자치센터 운영”으로 명확화 하기 위하여 “등” 제외</li> <li>• 원칙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나 부분적으로 의결·집행기능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관여범위 명확화를 위해 “등” 제외</li> </ul>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신 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해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p>	<p>◦ 위원회의 의결기능 대상 범위 제한적 명시</p>
<p>(신 설)</p>	<p>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위원회의 주민자치활동 활성화</p>
<p>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제17조(구성등) ① -----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p>	<p>◦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제고 ◦ 고문제도 신설 및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 가능</p> <p>- 임의적 규정으므로 시의원이 원치 않는 경우 미위촉 가능</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u>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u></p>	<p>② ----- ----- -----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위촉시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 도입으로 공정성 제고</li> <li>• 위원 자격 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강화</li> </ul>
<p>(신 설)</p>	<p>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u>각급 학교</u>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p> <p>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p>	
<p>(신 설)</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③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p> <p>④ <u>서산시의회의원은 고문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u></p> <p>⑤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u>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p>	<p>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계 각층 예시에 “경제계”, “일반주민” 포함</li> <li>• 어느 한 계층이 속한 위원이 1/3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균형성 유지</li> <li>• 여성위원의 경우 자치센터 이용자가 대부분 주부인 점을 감안하여 1/3이상이 되도록 권장</li> </ul> <p>• 제①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신 설)	<p>⑤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p>	<p>고문에 대한 위촉권자(읍·면·동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자격요건 명시</p>
(신 설)	<p>⑥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게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고문,위원 등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신 설)</p>	<p>⑦ -----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 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②(현행과 같음)</p>	<p>•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주민 참여기회 확대</p> <p>•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 방지</p> <p>• 고문의 역할 명시로 위원과 차별화</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신 설)</p> <p>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p>	<p>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u>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u>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u>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u> <u>자원봉사 내용</u> 등은 <u>위원회에서</u> 정한다.</p> <p>제19조(간사) (현행과 같음)</p>	<p>•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로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도모 및 자치센터 관리인력 부족 현상 보완</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li> <li>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 <li>3. <u>위원 스스로</u> 사퇴를 원하는 경우</li> </ol>	<p>제20조(해촉) ① ----- <u>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u> -----  ----- <u>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u></p> <p>1.~2.(현행과 같음)</p> <p>3. <u>스스로</u>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촉대상에 위원 이외에 고문 포함</li> <li>• 해촉사유가 주관적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li> <li>• 당연직 고문 해촉의 경우 해촉사유 제한 및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li> </ul> <p>• 고문도 포함되도록 용어 정리</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신·설)</p> <p>4. 기타 <u>위원으로서</u>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u>위원의 임기는</u>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p>	<p>4. <u>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u></p> <p>5. 기타 <u>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u> -----.</p> <p>② -----</p> <p>----- <u>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u> -----.</p>	<p>• 해촉사유의 확대 및 강화</p> <p>• 해촉사유의 확대 및 강화</p> <p>• 해촉후 후임자 임기 관련 당연직이 아닌 고문 포함</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 설)</p>	<p>제21조(회의)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p>	<p>•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 확대</p> <p>• 고문의 표결권 여부 명확화</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신 설)</p> <p>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u>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u>은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⑤ 읍·면·동장은 <u>지치센터 운영과</u> 관련하여 <u>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u> 발언할 수 있다.</p> <p>제22조(회의록) ----- <u>간사는</u> ----- ----- -----</p> <p>제23조(실비보상등) <u>고문을 포함한</u> 위원은 ----- ----- -----</p> <p>제24조(시행규칙등)(<u>헌행과</u> 같음)</p>	<p>• 읍면동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권 명확화</p> <p>•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 확대</p> <p>• 실비보상 대상에 고문 포함</p>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p>부 취</p> <p>제1조(시행일) 이 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